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8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병주·김남국·김민철

신현영 • 오기형 • 오영환

이용우 · 이원택 ·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3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(이주대책의 수립 등) ① | 제33조(이주대책의 수립 등) ① |
| ~ ⑤ (생 략) |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| 6 |
| 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| |
|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<u>감</u> | <u></u> _ |
| <u>안</u>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| <u>려</u> |
| 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 | |
| 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| |
| 다. | . |
| ⑦ (생 략) | ⑦ (현행과 같음) |